

에너지소비절약 종합대책

-동력자원부-

I. 국제석유정세의 새 국면

국제석유정세는 세계석유수요가 증대되고 OPEC 영향력이 강화되는 등 제1, 2차 석유파동直前期와 유사하게 전개되어 '89년 말부터 유가가 再上昇국면으로 반전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이라크·쿠웨이트 사태가 발발함으로써 高油價시대가 예상보다 앞당겨지고 있음.

- '80년대 하반기 이후의 低油價로 세계석유소비는 증대하는 반면, OPEC 국가의 증산한계, 에너지절약 및 대체에너지개발·이용의 저조등으로 국제에너지지표가 제1, 2차 석유파동시의 수준으로 접근하고 있음.

	1979	1985	1989
자유세계 석유수요 (百萬 B/D)	52.4	45.6	52.3
OPEC 점유율 (%)	61	38	45
OPEC 가동률 (%)	90	54	72

- '90년에 들어서 국제유가는 연초 강세를 보이다가 비수기에 접어들어 안정세를 유지하였으나, OPEC 총회를 전후하여 상승세로 반전

—'90. 7. 26 제87차 OPEC총회에서 기준유가 3\$/B 인상 (18→21\$/B)

	1989평균	1990. 1月末	1990. 6月末	1990. 7月末
OPEC 평균 (\$/B)	16.56	18.73	13.38	17.38

—8월 2일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사태 이후 국제유가는 8월 7일에 최고로 25~29 \$/B 수준으로 급등하다가 사우디 등의 증산발표로 다소 하락

(단위 : \$/B)

	5月末	6月末	8月		
			1일	7일	15일
두 바 이	13.82	13.01	18.27	25.40	24.00
W T I	17.49	17.09	21.65	29.62	26.54
국내도입가격	15.36	14.65			

- 이라크·쿠웨이트 사태를 계기로 '90년대 중반으로 예상했던 高油價시대가 사실상 앞당겨져 그 파동이 이미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음.

II. 최근의 에너지소비실태

최근 경제성장을 상회하는 에너지소비 증가세의 시현, 특히 비생산부문의 에너지소비 급증, 石油의존도의 재상승 등 불안한 에너지수급구조하에서 국제유기가 급등할 경우 우리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됨.

1. 에너지소비동향

- '80년대 후반기의 總에너지소비 증가율은 전반기에 비해 2배이상으로 급증
- '90년 5월까지의 증가율도 14.7%로서 '89년 同期의 8.3%보다 크게 증가
- 특히 '89년이후 總에너지소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상회

	'80~'85	'86~'89	'89	'90. 1/4분기
경제성장률(%)	6.2	11.2	6.7	10.3
1차에너지증가율(%)	4.5	9.7	8.4	12.9*
에너지/GNP탄성치	0.73	0.87	1.25	1.25

* 5월까지는 14.7%

- 우리의 에너지소비량은 아직 주요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에 있으나 소득에 비해 많이 소비하고 그 증가속도가 높음.

	한국	미국	서독	일본
1인당국민소득 (US달러)	4,968 (100)	19,813 (399)	19,741 (397)	23,285 (469)
1인당에너지소비량(TOE/年)	1.93 (100)	7.88 (408)	4.37 (226)	3.26 (169)
1인당에너지소비증가율(%)	7.3	4.1	0.2	6.2

* 韓國은 89년, 外國은 '88年 基準임.

- 최근의 에너지소비증가는 산업 및 수송부문외에 가정·상업부문에서도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음.

	1980~1985	1986~1989	1990. 1~5	구성비, %
산업	4.0	11.4	15.5	46.2
수송	3.0	16.3	17.2	18.2
가정·상업	4.7	2.4	13.5	31.3
공공·기타	3.8	6.1	11.7	4.3
계	4.1	8.8	15.0	100.0

(주) 최종에너지소비 기준

- 에너지源別 소비는 '90. 5월까지 石油 24.4%, 電力 16.6%, 원자력 13.6%가 증가한 반면, 무연탄은 6.5% 감소했음.

- 전력 최대수요 기록 : 8월 13일 17,252천kw ('89년 최대수요비 14.6%증)

(단위 : 증가율, %)

	1980~1985	1986~1989	1990. 1~5	구성비, %
石油	0.5	11.0	24.4	53.9
(전력)	(8.5)	(12.8)	(16.6)	-
유연탄	22.5	8.6	5.9	15.2
원자력	32.1	29.7	13.6	14.2
무연탄	5.4	△2.2	△6.5	11.3
기타	△2.7	13.0	14.4	5.4
계	4.5	9.7	14.7	100.0

• 제조업 에너지소비는 중화학부문의 비중증대에 따라 늘어나고 있으나, '89년부터 에너지소비증가율이 부가가치증가율을 상회하여 에너지효율이 크게 저하되고 있음.

	1986	1987	1988	1989	1990. 1/4분기
제조업성장률 (%)	18.4	18.8	13.4	3.7	7.1
제조업에너지 소비증가율(%)	8.6	13.8	15.0	9.2	13.7
제조업에너지의 부가가치탄성치	0.46	0.73	1.12	2.49	1.93

• 특히, 에너지소비경향이 생산부문이 아닌 소비성부문에서 고급에너지 중심으로 급증하는 등 과소비현상을 보이고 있음.

	1986~1989	1989	1990. 1~5
수송용 휘발유	31.0	37.5	33.7 3
가정·상업용 등유	16.2	52.9	104. 2
상업서비스전력	21.2	23.1	26. 7
가정용 전력	12.0	14.9	19. 3

• 총체적인 에너지소비는 급증하고 있으나, 국내부존자원인 연탄소비는 오히려 감소하여 에너지 해외의존도는 계속 심화되고 있고, 따라서 총수입액중 에너지수입액 비중도 높아지고 있음.

(단위 : %)

	1980	1985	1987	1989	1990.1~5
해외의존도 (연탄소비증가율)	73.5 (6.1)	76.2 (8.4)	80.0 (△2.7)	85.5 (△12.5)	86.7 (△6.5)
총수입에 대한 에너지수입비중	29.6	23.4	15.1	12.2	14.8

석유파동시의 수준으로 환원되고 있음.

	1973	1979	1985	1987	1989	1990. 1~5
石油비중(%)	53.8	62.8	48.2	43.7	49.6	53.9

- 에너지소비는 2차 석유파동이후 소득보다 가격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86년이후 계속적인 에너지가격 인하가 최근의 소비급증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90. 5월 현재 소비자물가와 에너지가격지수 비교

(1986. 1月 = 100)

소비자물가	등 유	경 유	휘 발 유	도시(취사용)	가스(난방용)	연 탄	전 력
128	56	54	57	69	51	114	81

- 도시근로자 가구당 광열비 消費지출

(단위 : 千원)

1989. 1/4분기	1990. 1/4분기	증감률(%)
30.8	35.3	14.6

2. 문제점 및 과제

- 최근의 국내에너지소비는 그동안 계속적인 에너지 가격 하락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에너지소비경향이 일반화되어가고 있음.
- 에너지소비 내용을 보면 산업부문보다 가정 및 서비스부문에서 크게 증대되고 있고, 石油, 電力등 고급에너지 위주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음.
- 또한, 石油 및 전력수요가 예상보다 급증함에 따라 정유공장 가동률이 100%를 넘는 이상현상이 나타나고, 전력도 공급예비율이 적정선을 하회하고 있어 국내 에너지안정공급기반을 불안하게 하고 있음.
- 한편, 최근 이라크·쿠웨이트사태 직후 유가가 폭등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90년대 중반에 올 것으로 예상되던 고유가시대가 앞당겨지고 있음.
-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에너지의 공급확대 및 수요 관리를 위한 적절한 대책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으므로 에너지소비절약시책을 강력히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III. 에너지소비절약 종합대책

1. 기본방향

국내에너지 소비패턴이 크게 변화되고 비생산부문의 에너지과소비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제 석유정세마저 불안이 고조되고 있어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강력한 소비절약시책이 어느때보다도 절실히 요청되고 있음.

- 기존 에너지절약시책은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미흡한 부문은 실효성있게 보강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부문은 개선보완
- 생산활동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에너지가격 수준과 그 구조를 조정하여 과소비가 억제되도록 조치
- 에너지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개편유도를 위해 지원 정책 강화
- 에너지절약기술의 개발 및 보급촉진, 집단에너지 공급 확대 등 원천적 절약방안 적극 추진
- 에너지자주공급능력 확충을 위해 대체에너지 개발·보급과 해외자원개발의 적극 추진
- 범국민적인 에너지절약운동을 전개하여 에너지절약을 생활화

2. 주요절약시책

(1) 過消費 억제를 위한 수요관리 강화

국민경제에 바람직하지 못한 에너지 과소비 부분은 생활에 다소 불편이 따르더라도 일부 타율적인 규제 시책을 채택하여 억제

- ① 기존 각종 절약시책(122종)의 조정 보완
- 에너지 10% 절감운동 전개
- 현행 전기절약시책의 수정 보완
- 건물의 냉난방온도기준 설정
- ② 새로 추진할 절약시책
- 사우나등 에너지다소비형 호화·사치성건물 신축제한
- 건물의 냉방용 전력수요 감축
 - 지역난방 열이용 또는 가스냉방방식의 활용유도
- 승용차의 연비 향상 유도(수입차 포함)
- 주요개발사업에 대한 에너지영향평가제도 도입

(2) 에너지가격정책을 통한 소비절약유도

에너지가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에너지가격 구조를 개편하고, 소비절약유도를 위하여 생산활동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에너지가격 조정

- ① 자가용승용차의 휘발유 과소비 억제
- 현행 자동차세를 조정하여 중·대형차에 중과
- 휘발유 소비억제를 위해 휘발유에 주행관련세 신설
- ② 전력요금제도의 합리적 조정을 통한 전력수요억제
- 주택용 요금의 누진제 확대
- 여름철 수요집중억제를 위한 계절적·시간대별 차등 요금제 확대(산업용 및 업무용)
- 업무용 수요억제를 위한 제도 보완
 - 과소비에 대한 중부과방안 마련
- ③ '91년도에 에너지가격구조의 전면 재조정

(3) 에너지低消費型 경제·사회 시스템화 실현

구조적·제도적으로 에너지절약이 이루어지도록 산업구조·수송체계 등을 에너지低消費型으로 개편 추진

- ① 에너지低消費型 산업구조의 개편 촉진

- 에너지多消費공장의 신·증설 억제유도 및 절약형 시스템 도입
 - 신·증설시 에너지사용계획 정밀 검토
 - 열병합발전소등 절약형 시스템 도입
- 에너지低消費型 첨단산업 및 에너지절약 기자재산업 적극 육성
- ② 수송용 에너지소비절약 및 차량소통 원활화를 위한 수송체계의 합리화
- 에너지절약형 대량 에너지수송시스템의 구축으로 수송용 에너지절약
 - 대량 유류 수송을 위한 전국 송유관망 건설추진
- 대중교통수단의 확충 및 수송체계 합리화로 효율성 제고
 - 지하철등 대중교통체계 구축
 - 대도시 소통난 완화대책 강구로 주행효율 개선
- ③ 에너지절약형 건물 신축확산
- 에너지절약제획서 심사(허가시) 내실화 및 열손실방지조치확인 철저
- 에너지시설 중앙제어시스템 도입 및 자동화장치 보급 확대
- ④ 廢資源(폐열, 쓰레기, 폐타이어등) 재이용 확대
- (4) 원천적 절약기술의 개발 및 보급 촉진

단순절약기법의 한계극복 및 에너지이용효율 증대를 위하여 원천적인 절약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을 촉진

- ① 에너지절약 실용화기술 중점 개발
- 산업체·건물·수송등 부문별 절약기술 실태조사 실시
- 민간기업의 실용화 기술개발은 에너지관리공단이 적극 추진
 - 연구개발비 지원 확대(현재 연1억원 수준)
- 장기·기초기술은 정부주도하에 적극 추진(현재 연10억원 수준)
- 에너지관리공단의 연구개발 및 기술정보기능 강화
 - 국내외 절약 신기술 및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업체제공
- ② 에너지절약 신기술의 보급 추진

- 우수 절약기술 적용시 장기저리자금 융자지원
- 중소기업에 대한 에너지진단비용 일부 지원
 - ③ 대체에너지 개발보급의 촉진
- 2001년까지 總에너지수요의 3%수준 공급목표로 기술 개발 보급
- ④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의 육성

전기와 熱을 인근에서 동시에 공급하는 집단에너지 방식은 에너지이용효율이 20~30% 향상되고 대기오염을 50%이상 감소시키며 폐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시킬 수 있는 에너지공급방식이므로 이를 주택 및 공장에 적극 도입

(5) 집단에너지공급체계의 획기적 확대

	盆 唐	坪村 / 山本	一 山	富川中洞	水西 / 大峙	計
세대(천세대)	98	85	119	68	60	430

확대

- 木洞, 南서울 2개지역(67천세대)에 지역난방방식 가동 중
- 盆唐, 坪村등 신도시 개발지역에 보급
- 기존 지역(果川, 上溪등)도 가능한한 도입추진
 - ② 공업단지에 대한 집단 열병합발전방식 확대
- 大邱, 蔚山, 麗川 3개공단(116개업체)에 도입 가동중
- 半月, 龜尾등 8개공단(1,035개업체)에 추가 건설
- 기존 공단(65개)중 타당성이 있는 공단도 단계적으로 도입 추진
 - ③ 집단에너지공급체계 확립
- 장기 기본계획의 수립
- 「집단에너지사업법(가칭)」 제정 추진

(6) 절약촉진을 위한 지원제도의 강화

에너지절약 투자의욕을 진작하고, 에너지절약기술의 연구개발, 집단에너지공급사업등 절약투자사업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금융·세제등 유인시책 강화

- 에너지절약기술 및 대체에너지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지원
- 우수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및 신기술 실용화 지원
- 집단에너지사업, 주택단열사업등 절약사업 지원
 - ② 에너지절약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세제지원 보강
- 에너지절약투자금에 대한 여신제한의 완화로 투자촉진 유도
-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제지원 지속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시 투자액의 10%(수입기자재 : 3%) 세액공제제도 또는 90 / 100 특별상각제도 ('91. 12. 31 폐지 예정) 계속 연장

(7) 전국민이 참여하는 새로운 절약운동의 전개

최근 절약의식이 크게 이완되고 있어, 에너지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추진체제를 재정립하고, 국민의 절약정신이 생활에 정착될 수 있도록 범국민적인 절약운동 전개

① 에너지절약시설투자의 확대

에너지절약분야에 대한 자금별 융자실적

(단위: 억원)

	1980~1986	1987	1988	1989	1990(計劃)	計
금융자금	5,681	-	-	-	-	5,681
에너지이용 합리화기금	142	9	14	5	135	305
石油事業基金	4,069	3,342	1,848	2,132	1,310	12,701
計	9,892	3,351	1,862	2,137	1,445	18,687

자부장관)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등의 전담기능 보강 및 에너지 다소비업체의 에너지관리기구의 구성·운영
- ② 에너지절약운동의 적극 전개로 절약을 생활화
- 에너지절약운동의 전개
- 에너지절약 홍보를 공익광고로 채택하여 체계적·자 속적인 홍보
- 에너지절약 생활실천사항의 습관화 정착
- 모든 공공 및 민간단체의 적극 참여
- ③ 첨단 에너지종합홍보관의 건립·운영
- 大田 국제무역산업박람회장에 건설(韓電, 에너지管理 公團 공동)

- ④ 범국민적인 에너지소비절약의식 고취를 위한 행사 활성화

- 「에너지절약의 달」행사의 매년 개최(11월)
 - 에너지절약축전대회 및 우수에너지기자체 전시회 개최
 - 우수에너지절약사례의 발굴·전파 및 포상확대

IV. 부문별 세부추진계획

1. 수송부문

(1) 당면 추진시책

	추 진 내 용	주관부서 (協調)	비 고
1. 자가용승용차의 관련세제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자동차세를 조정하여 중대형차에 重課 ※현행 자가용승용차의 자동차세(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00cc이하 : 293천원 - 1,500~2,500cc : 487천원 - 2,500cc이상 : 1,060천원 • 휘발유소비 억제를 위해 휘발유 특소세 인상 (130%수준) 	내무부 (기획원) (재무부) (동자부)	관련세법 개정(연내)
2. 승용차의 연비향상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低燃比차량의 생산 및 수입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 기준제정 권장실시후 법제화 • 향후의 燃比향상목표 설정 및 예시 	동자부 상공부 (교통부) (환경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91)
3. 택시의 中型化 계획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시 중·개차시 반드시 中型택시로 하도록 하는 현행방침('90. 7 교통부)을 해당지역 특성을 감안 시도지사가 결정토록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부 방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釜山 : '90. 10. 1이후 폐차, 대체 및 중차시 中型의무화 · 기타 직할시 : 관할시장이 적정 추진 	교통부 (시도)	
4. 주유소 영업시간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송용에너지 소비절약 필요성을 계도하기 위하여 주유소 영업시간 일부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한시간 : 24:00~04:00 - 대상 : 전주유소(단, 고속도로, 터미널주유소 등은 제외) 	동자부 (시도)	
5. 자가용승용차의 주차료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심지역 주차장의 주차료 대폭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영주차장의 요금을 우선 인상하여 민영주 	건설부 (시도)	

	추진 내용	주관부서 (協調)	비고
6.에너지절약 운전기법 보급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장에도 유도 외곽 및 전철역 주변의 주차료는 인하 ※현행 주차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심지 : 500원 / 30分 (2시간이후 1,000원) 역세권 : 200원 / 30分 (지하철 정기승차권 구입시 50% 할인) 운전면허시험 및 교통관련교육시 에너지절약 운전기법 반영 -에너지절약 교재 배포 	내무부 (동자부)	

(2) 중장기 추진시책

	추진 내용	주관부서 (協調)	비고
1.에너지 수송의 절약 형체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 송유관망 조속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仁川-서울간 : '92년도 완공 溫山-서울간 : '93년도 완공 麗水-서울간 : '93년도 완공 	동자부	
2.대도시 교통종합시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도시 소통난 완화대책 실시로 주행효율 향상 및 에너지절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 확충 -전철역 인근에 주차시설 건설 (PARK & RIDE시스템) 등 	교통부	
3.2대이상 보유시 자동차세 증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구당 2대이상 자가용 승용차 보유시 자동차세 증과 	내무부	

2. 가정·상업부문

(1) 당면 추진시책

	추진 내용	주관부서 (協調)	비고
1.전력수요억제를 위한 전력요금제도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용 요금의 누진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누진단계 또는 누진폭 확대 <p>1979 12단계 누진(1:15.2), 현재 4단계 누진(1:4.2)</p>	동자부	추후 전기요금 조정 시 반영

	추진 내용	주관부서 (協調)	비고
2. 전기사용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용 전력 과소비 억제를 위한 제도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름철에 고率요금을 부과하여 계절별 차등 폭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여름철이 기타 계절보다 10% 고율) - 냉방용 전력계약은 비수기에도 기준요금 부과 • 현행 제한규정의 이행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무실, 일반공장의 백열등사용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설계, 제도, 계산등 특수작업을 요하는 장소는 제외 ② 광고선전용 옥외간판은 업소당 1개 사용허용 ③ 投光器의 옥내외 사용금지 ④ 엘리베이터의 3층이하 운행금지 및 4층이상 격층제 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병원, 관광호텔은 제외 ⑤ 일반시설운동장의 야간조명시설 사용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정구장은 제외 ⑥ 상업용 전자식전광판의 사용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의료기관, 약국, 관광호텔, 역, 터미널 및 공익을 위한 안내용은 제외 ⑦ 소형조명전구 광고물의 옥외사용금지 • 제한대상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네온사인, 전자식전광판 및 소형조명전구의 옥외광고 사용시간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시간은 일몰후 24:00까지 ② 영화관의 24:00이후 전력공급제한 	동자부 (시도)	절전고시
3. 냉방기기 가동에 의한 실내경기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절기에는 전력최대수요시간대를 피하여 개최 유도 • 적용기간 및 시간 : 7. 10~8. 20(09:00~17:00) 	체육부	
4. 에어컨의 수요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용량 에어콘에 의한 전력 과소비 억제를 위해 특소세 중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3kw이상 에어콘 - 현행 25%→32.5% (탄력세율 적용) 	재무부 (상공부)	
5. 에너지 多消費型 호화사치성 건물신 축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동음식점, 위락시설(사우나등), 판매시설, 숙박시설등의 신축제한(증개축 및 용도변경 포함) 	건설부	

	추진 내용	주관부서 (協調)	비고
6. 주택 및 건물의 단열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월 30일까지로 된 制限期間을 繼續 연장 • 단열시공 중간검사제도의 철저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 공정시 현장점검 - 시도 및 공단직원 수시 협동점검 	건설부 (시도)	
7. 열량계 설치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주택규모이상의 아파트는 설치 의무화 ('90년부터) • 국민주택규모이하에도 설치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시 설치의무화 추진 	건설부 (시도)	
8. 건물의 적정 냉난방 온도기준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권장사항인 냉난방온도기준을 습도를 고려한 기준설정 법제화 ※현행기준 : 하절기 26°C 동절기 22°C 	동자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
9. 가전제품 에너지 효율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자체, 광고 및 상품안내서에 에너지효율표시 이행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전면등에 에너지효율 표시 	상공부 (동자부)	

(2) 종장기 추진시책

	추진 내용	주관부서 (協調)	비고
1. 에너지 절약검토 기준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허가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중 현재 까지 검토기준이 없는 숙박시설 및 병원, 목욕탕 및 실내수영장, 판매시설에 대한 검토기준의 조속 제정 	건설부	
2. 건물의 냉방용 전력 수요 감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도시지역은 지역난방방식으로 전환 • 신도시이외 지역의 경우에는 가스 냉방방식 설치유도 	동자부 (건설부)	
3. 관광호텔 객실조명 자동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호텔에 자동점멸장치 (Room Key Tag System 등) 설치 ※현재 전기설비기술기준(동자부령)에는 반영되어 있음 	건설부 (동자부) (교통부)	
4. 공장의 임여열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체 임여폐열의 인근공장 및 주택에 공급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자금의 지원 	동자부	

3. 산업부문

	추 진 내 용	주관부서 (協調)	비 고
1. 산업용 전력요금의 시간대별·계절별 차등폭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름철 주간에 나타나는 최대수요억제를 위해 여름철 및 주간에 고율요금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여름철에는 기타계절보다 10%정도 고율 	동자부	추후 전기요금 조정 시 반영
2.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재원의 안정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너지 절약시설투자에 연 2,000억원이상 계속 용자되도록 재원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저리 금융자금과 재특자금으로 지원 	동자부 (기획원)	
3.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10% (외국산3%) 또는 90 / 100 특별상각제도 ('91. 12. 31 시한만료)연장 	재무부	
4.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여신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기업에 대해서도 용자기능토록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유사업기금 용자지침 개정('90. 9월중) - 에너지절약시설자금은 여신한도 제외 - 1년간 유예조치후에도 계속 허용 	재무부	
5. 산업체의 에너지절약기술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대상 : 에너지다소비업체(1,500TOE / 년 이상) 약 700개 에너지관리공단이 '90년 하반기부터 실시 	동자부 (공단)	
6. 중소기업에 대한 에너지진단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단비용 일부 보조 ('91년 소요예산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단결과 시설 개체시 용자지원 	동자부 (공단)	
7. 목표에너지원단위 설정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체별 원단위의 향상목표 설정 및 실천 유도 同種업체의 우수한 원단위 개선실태를 조사, 관련기업에 제공 	동자부 (상공부) (공단)	
8. 에너지 절약 전문업체의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기업체 지정요건 및 육성방안강구 	동자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
9. 에너지 영향평가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공업단지, 도시, 건물, 교통시설등 건설시 에너지수요 최소화방안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기준 및 방법등 제도화 	동자부 (기획원) (환경처)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개정
10. 지역난방의 도입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택지 개발시 집단에너지 도입가능지역에 대하여는 도입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益唐·坪村등 신도시개발지역에 보급 - 기존지역(果川·上溪등)도 가능한한 도입 추진 	동자부 (건설부)	
11. 공업단지 집단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半月공단, 龜尾공단등 8개 공업단지(1,035개업 	동자부	

	추 진 내 용	주관부서 (協調)	비 고
지공급 확대	<p>체)에 집단에너지공급 도입(증설)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공업단지에 대한 집단에너지공급 정밀 타당성 조사후 도입 추진 -전국 65개공단중 타당성 있는 공단은 단계적 도입 추진 •신규 조성 대단위공업단지의 집단에너지공급 타당성조사 의무화 및 도입 추진 •장기기본계획 수립 및 「집단에너지사업법(가칭)」 제정 	(상공부)	
12. 대체에너지 개발 보급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1년 총에너지 수요의 3%공급을 목표로 기술개발사업 적극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太陽光發電, 燃料電池 등 첨단기술분야는 범국가적연구사업으로 중점개발 지원 -폐기물, 바이오에너지등 단기간내에 실용화 가 가능한 분야는 기업주도연구사업으로 상용화 추진 •태양열·바이오·폐기물에너지분야등 실용화 된 대체에너지 이용시설에 대한 융자지원 확대 	동자부	

4. 홍보 및 기타부문

	추 진 내 용	주관부서 (協調)	비 고
1.에너지 10%절감운동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기관 에너지 10%절약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기관의 전력, 수도, 유류 10% 절감 -대상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 기관, 교육위원회, 금융기관등 -기관별로 실정에 맞는 세부계획의 수립 및 실시 -합동점검반 운용(12월) -우수기관 포상(연말) •공공기관 이외의 산업체, 업소 및 가정에도 10%절감운동에의 동참 유도 	총무처 (전부처)	
2.에너지절약홍보의 적극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너지관련기관 공동홍보대책협의회의 설치 · 운영 	경제단체 소비자단체 동자부	

	추진 내용	주관부서 (協調)	비고
3. 에너지 종합홍보관 전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를 망라한 광범위한 홍보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단체등 민간단체의 홍보 동참 유도 - 언론기관의 캠페인운동 확대 - 공익광고와 유료광고 병행 • 에너지절약 생활실천사항 대량 배포 • 에너지절약 스티커의 대량제작 배포 • 기타 지하철광고, 담배갑광고등 홍보수단의 다양화추진 • 시청각자료의 제작·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영화, 슬라이드등 제작상영(극장상영, 정부부처, 각급 교육연수기관 활용) • 大田국제무역산업박람회에 에너지종합 홍보관 전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자부 (공보처) 동자부 (내무부) (서울시) 동자부 상공부 (동자부) (한전) (공단) 	
4. 에너지 절약우수 사례 포상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절약 우수업체·단체·가정 및 개인포상 확대 	동자부 (총무처)	

□ 석유상식 □

GCC

GCC(Gulf Cooperation Council) 즉 페르시아湾협력협의회는 이란혁명과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등으로 페르시아湾의 긴장이 고조되던 1981년 5월 페湾연안의 6개국 정상들이 모여 결성한 국제기구.

이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연합, 오만등 6개국의 정상들은 아랍에미리트의 수도 아부다비에서 수뇌회담을 열고 가맹국간의 긴밀한 협력과 협조를 전제로 군사, 경제, 문화, 정보, 사회, 법률 등의 분야에서 제도를 일치시키기위해 노력한다는 협상을 서명을 했다.

그후부터 이들은 치안·국방면에서의 단결을 강화해 있으며 이란혁명의 파급저지, 이란-이라크 전쟁에 있어서

의 이라크지지등 공동보조를 취해왔으며 '88년 12월 제9차 정상회담에서는 팔레스타인의 독립국가 선포를 지지했고 油價안정을 위한 산유국간의 협력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 GCC회원국들은 모두 王政국가들이어서 이번 이라크의 쿠웨이트침공사태에 가장 충격을 받고있다. 따라서 GCC국가들은 공동운영체임을 절감하고 있으며 특히 이라크가 쿠웨이트에 이어 사우디전복을 선언, 이들은 결속을 다지고 있다. 최근 결정기관으로는 정상회의가 있고 정상회의직속의 분쟁중재기관과 각국의 의상으로 구성되는 각료이사회, 사무국등의 조직이 있다. 본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아드. (경향신문)